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1. 의결주문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협의는 주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,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하고, 해당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29. ~ 9.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”을 “위원장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”를 “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”를 “사항을 협의한다”로 한다.

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”를 “제3조제3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④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”을 “위원장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되고,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”를 “제4조제3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4조제5항제2호 또는 제4호”를 “제4조제5항제2호”로 한다.

제4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의 구성·기능 등) ① 법 제8조제1 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 의회(이하 “중앙협의회”라 한 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(중앙연안사고예방협회의의 구성·기능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장 1명</u> ----- ----- -----.			
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 경찰청 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에서 호선(互選)한다.	② ----- ----- 된다.			
③ 중앙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 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----- ----- -----.			
1. ~ 3의2. (생략)	1. ~ 3의2. (현행과 같음)			
4.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<삭 제>			
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	<삭 제>			
⑤ 중앙협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	⑤ ----- <u>사항을 협의한다.</u>			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			
제3조의2(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) 해양경찰청장은 제3조제3항제1	제3조의2(중앙협의회 위원의 해촉) ----- 제3조제3항제1			

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
(解囑)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3조의3(중앙협의회 운영) ①
~ ③ (생략)

<신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
중앙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4조(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
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
구성·기능 등) ① 법 제8조제1
항에 따른 광역연안사고예방협
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
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
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
으로 각각 구성한다.

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광역
연안사고예방협의회(이하 “광역
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지

호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조의3(중앙협의회 운영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안전
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
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----- 제4항-----

-----.

제4조(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
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
구성·기능 등) ① -----

---- 위원장 1명-----

-----.

② -----

방해양경찰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광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(이하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지역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⑥ 제3항제4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⑦ (생략)

제4조의2(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

----- 된다.

③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④ -----

----- 된다.

⑤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⑦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

회 위원의 해촉) ① 지방해양경
찰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 또
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3조
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
촉할 수 있다.

② 해양경찰서장은 제4조제5항
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
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
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4조의3(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
회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광역협의회 및
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
항은 위원장이 광역협의회 및
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1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해
양경찰청장(제11조제2항에 따

회 위원의 해촉) ① -----
----- 제4조제3항제2호---

-----.

② ----- 제4조제5항
제2호-----

-----.

제4조의3(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
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
음)

④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
위원장은 안전 협의를 위하여
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
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
들을 수 있다.

⑤ ----- 제4항-----

-----.

제12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

라 해양경찰청장의 사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3조제3항제4호,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중앙협의회, 광역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무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	
연 락 처	(032) 835 - 2539